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신종갑 의원)

의안 번호	22-101
----------	--------

발의년월일 : 2022. 9. .

발의자 :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김영미, 남해석, 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1. 제정이유

마포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대상(안 제3조)

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4조 및 제5조)

라.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및 회의록 보존(안 제6조 및 제7조)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2. 9. 13. ~ 9.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심의·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록의 공개)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 명단의 공개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회의록 보존)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기획팀 신미림
연 락 처	02-3153-8507